

공무직근로자(시설관리: 기계) 채용 공고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시설 관리직) 채용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 9.

특 허 법 원 장

1. 채용예정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담당 직무내용	근무예정기관	선발예정인원
공무직근로자 (시설관리:기계)	청사 및 부속시설(건물, 주차장, 기타 부속시설 일체) 운영 및 관리업무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특허법원	1명

※ 담당 직무에 대한 상세내용은 【붙임】 직무기술서를 참조

※ 공무직 근로자 : 법원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근로조건 등

가. 신 분 : 공무원직 근로자(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나. 정 년 : 만 60세(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정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정년에 도달한 자 중 근무성적이 우수한 근로자 이면서 계속근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 만 65세까지 기간제근로자로 근무 가능

다. 근로계약기간 : 기간제 및 공무원직 근로자 관리규정(행정예규)에 의함

1) 근로계약기간 : 정년까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2) 수습기간 :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3개월

※ 수습기간(3개월) 중 업무수행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채용(정식채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

라. 보수

1) 기본급 :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최저임금에 연동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2) 자격수당, 식비, 상여금, 맞춤형 복지는 관련규정 등에 따라 별도 지급

3) 후생복지 : 4대 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 가입 등

마. 근무시간(기관사정에 따라 근무시간 변동 가능)

－ 주간업무 : 주 5일(40시간), 1일 8시간 (09:00 ~ 18:00, 점심시간 1시간)

－ 5교대 내지 6교대 근무

※ 업무특성상 주 52시간 내에서 휴일 근무를 할 수 있으며,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 및 근무방법 등은 변동될 수 있음

바. 주요업무

1) 청사 시설관리업무(기계설비, 공조설비, 위생설비 운전, 점검 및 보수 등)

2)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3. 응시자격

가. 기본요건

- 1) 기간제 및 공무원 근로자 관리규정 제12조 채용결격사유(기준일 : 면접시행 예정일)가 없어야 함
- 2) 기사(기계) : 기계설비법 시행령[별표 5의2]의 중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으로 선임이 가능한 자 (아래 표와 같음)

보유자격	실무경력	자격 구분
기능장	4년 이상	배관·에너지관리·용접 분야
기사	4년 이상	일반기계·건축설비·건설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설비보전·용접·에너지관리 분야
산업기사	7년 이상	건축설비·배관·건설기계설비·공조냉동기계·용접·에너지관리 분야
중급 건설기술인	4년 이상	공조냉동 및 설비·용접 분야에서 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하여 4년 이상의 실무경력으로 중급 건설기술인 자격을 보유한 자

나.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년(만60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다. 학력 및 성별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라. 근무시기 : 2025. 2. 12.(수)

마. 서류전형 우대사항

- 1) 경력자 및 자격증 소지자
 - 직무분야 경력자 및 시설 분야 자격증 소지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 및 공공기관 외의 동종·유사 경력 증명서 및 자격증 제출자에 한함

- 2) 장애인,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등 우대

요 건	관련 법령에 의한 기준	증빙 서류(제출 서류)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 제10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차상위 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한부모가족증명서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등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취업보호지원대상자증명서 (국가보훈처 발급)

※ 우대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는 접수일 현재까지 제출하여야 함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1)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여부 결정
- 2) 단, 응시인원인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1) 인성, 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2)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5.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25. 1. 16.(목) ~ 1. 20.(월) 10:00 ~ 16:00	2025. 1. 24.(금)	2025. 2. 3.(월) 14:30	2025. 2. 7.(금)

※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는 특허법원 홈페이지 [<http://patent.scourt.go.kr/소식/새소식>]에 공고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조치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개별통지 아니함)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장소 : 특허법원 9층 총무과 (☎ 042-480-1443)

[대전 서구 둔산중로 69(둔산동),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하차하여 ④번 출구에서 걸어서 5분거리]

※ 점심시간(12:00 ~ 13:00)은 교부 및 접수가 불가합니다.

나. 교부방법

응시원서는 교부기간 동안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홈페이지(<http://examscourt.go.kr>),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대국민 서비스-소식-새소식"란 또는 특허법원 홈페이지(<http://patent.scourt.go.kr>) "소식-새소식"란 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A4(210mm × 297mm) 크기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 접수방법 :

- 접수기간 내에 접수처에 본인이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우송(접수 마감일자 까지 도착분에 한함)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송용 우편봉투에 등기우

표를 부착하고, 받는 사람의 성명, 주소 및 우편번호를 기재하여 동봉하며 봉투 겉표지에 ‘공무직 근로자(시설관리원) 응시원서 재중’기재

※ 주소:[35239] 대전 서구 둔산중로 69, 특허법원 총무과

라. 접수시 유의사항

- 1) 응시원서는 대리인 접수, 단체접수를 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의 서식과 그 내용 및 제출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2) 접수 취소기간까지는 응시원서 제출명의자에 한하여 응시원서 접수처에 출석하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의하여 제출명의자임을 확인받고 응시원서 취소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워드 작성 가능) 1부 (첨부양식)

나. 이력서(워드 작성 가능) 1부(첨부양식)

- 1)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 자격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소개서 (워드작성 가능)1부(첨부 양식)

라. 직무수행계획서(워드작성 가능) 1부(첨부 양식)

※ 시험공고의 덧붙임 직무기술서에 명시된 담당예정업무와 연계하여 작성

마.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관, 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하며, 발급확인기관이 법인격 있는 단체 또는 회사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

바. 주민등록표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기재 포함)

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자격증명서) 1부

아. 장애인, 저소득층, 국가유공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 등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 등에서 사전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차상위 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첨부 양식) 1부.

※ 제출서류 편철은 위 순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증명서 상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는 생략 또는 마스킹(masking) 처리하여 제출하시고, 자기소개서에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 및 민감정보(사상, 종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가족의 직업 등) 등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가.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전형을 거쳐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원서 기재사항 오기·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합니다.

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조치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

용되지 않습니다.

- 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재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마.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최종 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14일까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합격자는 제외)되며, 반환되지 않은 접수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바.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사. 면접시험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응시자 대기실로 출석하여야 합니다.
-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허법원 총무과(☎ 042-480-144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공무원직 근로자 관리 규정 등에 의합니다.

※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채용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무직 근로자(시설관리:기계)직무기술서

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지
특허법원	특허법원 청사

주요업무	○ 청사 내·외부의 해당 시설에 관한 관리, 보수, 점검(월간, 주간, 수시)등 기타 관련 업무 ○ 시설실 상황 근무 ○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	---

필요역량	○ (공통 역량) 직업윤리(공정성, 청렴성), 직업의식(책임감, 사명감)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팀 워크지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	---

필요지식	○ 기계시설물 점검 및 보수 지식 : 기계설비, 공조설비, 위생설비 등 ○ 작업공구 활용능력 : 전동공구, 용접공구, 일반공구 및 계측기기 등 ○ 기계자재 용어 및 용도 이해 : 기계, 배관, 덕트 등 ○ 기타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지식
------	---

응시 자격 요건	관련분야 : 시설관리(기계) 등	
	자 격	○ 만 18세 이상의 정년(만 60세)에 도달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사람 ○ 중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으로 선임이 가능한 자
우대요건		○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의 시설관리 경력자 우대 ○ 장애인,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등 우대